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가단4352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 2018. 11. 7

판결 선고 2018. 11. 21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,002,739원과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1.부터 2018. 8. 2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 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,002,739원과 그 중 원금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8. 8. 25.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,현 대표자 C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 B에게만 이 사건 구상금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부적법하다거나 이유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,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송인우

별지